의 안 번 호	제2호
의결 연월일	2020. 2. 10.

논산시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0년 2월 3일 논산시장

나. 회 부 일 자 : 2020년 2월 3일

다. 상 정 일 자 : 2020년 2월 10일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

2. 제안설명 요지 (제안 설명자 : 열린홍보실장)

가. 제안이유

○ 모바일 이용자가 날로 증가하고 소셜미디어가 의사소통의 중요한 수단으로 부상함에 따라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시정홍보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정에 대한 이해와 행정 참여를 높이고 시민들과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
○ 소셜미디어 계정 개설 및 운영(안 제3조)

○ 게시물 관리(안 제4조)

○ 소셜미디어 활용(안 제5조)

○ 참여행사 개최(안 제6조)

○ 소셜미디어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(안 제7조)

○ 예산의 지원 및 포상(안 제8조 및 제9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: 생 략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 략

5. 토론 요지 : 생 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